

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가.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(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 기준 변경)

나.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외부감사·내부감사 방해 등에 대한 가중사유 및 별도조치 기준 보완)

다.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(포상금의 산정 기준금액, 포상 시기 등 개선)

라.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·신고 등에 관한 규정 (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방법 확대 및 포상금 산정 세부기준 변경)

마.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(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주기 및 지정 회사 수 확대)

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(2026/5/27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 기준을 변경하고,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금액의 산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내부감사, 외부감사 방해행위 처벌 강화(별표 7 제3호)

— 외부감사 및 내부감사 방해행위를 제재 가중사유로 추가

-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열람, 복사,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, 방해,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
- 회사의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나 정보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

- 다수의 과실 오류 발생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신설(별표 7 제5호)

— ‘과실’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고 위반금액 합산 시 중요도의 8배 초과시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고시 및 보도자료,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□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감법 과징금 상향(별표 8 제2호)

- 의도적 회계정보 은폐·조작, 자료 위변조 등을 통한 재무제표 공시 위반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

나.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2026/5/27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외부감사 방해행위, 내부감사기구의 자료요청 및 시정요구 거부 등에 대한 가중사유를 신설하였으므로 시행세칙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외부감사·내부감사 방해 등을 이유로 한 가중사유 보완(별표 1 VI.2.가.)

- 외감규정 개정안을 반영하여 외부 및 내부감사 방해행위 등에 대한 조치 가중사유 신설

□ 외부감사·내부감사 방해 등에 대한 별도조치 기준 보완(별표 1 V.6.)

- 외부·내부감사 방해 등을 감리방해와 동일하게 고의(2단계)로 별도 조치하도록 조치기준 신설
 - ‘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’(2025.8.27. 금융위·금감원 발표)에서 외부·내부감사 방해 등을 감리방해와 동일하게 고의(2단계)로 별도 조치하기로 하여, 시행세칙에 조치양정기준을 신설

□ 다수 과실 위반에 대한 제재를 조치기준에 신설(별표 1 V.9.)

- 외감규정 개정안을 반영하여 다수 과실 위반사항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조치를 추가
 - 외감규정 개정안은 회사의 내부회계정보 산출체계의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의 과실 위반 제재조치를 신설(2026.5.27.)하였으므로 시행세칙에 이를 반영
 - ‘과실’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고 위반금액 합산시 중요도의 8배 초과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 부과(1~3년)

□ K-IFRS 제1118호 시행에 따른 양정기준 개정(별표 1 IV.1.나.)

- K-IFRS 제1118호에 따라 주식 공시한 영업손익의 경우 B유형을 적용하도록 개정
 - K-IFRS 제1118호 시행(2027.1.1.)에 따라 현행 기준 영업손익을 ‘주식’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나, ‘현행 기준 영업손익’의 표시 위치가 주식으로 변경되더라도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, 현행 회계기준 위반과 동일한 수준의 양정기준(B유형)을 적용할 필요
 - 현행 기준 영업손익의 표시위치 변경으로 제재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양정기준을 보완(2025.12.19., 금융위 보도자료)

□ 의견제출 방법에 대한 시행세칙 정비(제40조 제3항)

- 행정절차법과 동일하게 서면, 구두,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정
 -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의견제출 방법을 행정절차법(제27조 제1항)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비

다.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(2026/5/26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 변경(제2조 제2호)

- (기존) 포상금 지급한도는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
- (개정) 신고를 통하여 회사, 회사관계자, 감사인으로부터 징수된 과징금 총액(과징금이 일부 납부된 경우 납부된 과징금 금액)의 30/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도로 함

□ 포상의 시기 개선(제6조의2 신설)

- 포상은 다음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종료되고, 증권선물위원회(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)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(분할 납부의 경우 최종 고지분의 납부사실)이 확인된 때 실시
 -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
 -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
-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결과 과징금 부과처가 확정된 날(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)을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로 보아 포상을 실시할 수 있음
 - 1.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(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)에 대해 포상을 실시
 - 2.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과징금 총액이 전부납입 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과 제1호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에 대해 포상을 실시

□ 부처 간 칸막이 해소(제5조)

- 증권선물위원회,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 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,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

□ 평가·환류체계 마련(제9조의2 신설)

-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신고포상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등을 5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함

라.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·신고 등에 관한 규정 (2026/5/26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30%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기 위해 포상금 산정의 세부기준을 변경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방법 확대(제34조 제4항 신설, 제42조의2)

-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도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
- 몰수·추징된 재산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몰수·추징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□ 신고자가 가담자인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(제38조 제5호)

-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가 아닌 한 포상금을 지급

□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(제39조 제1항, 별표 1)

- (기존) 기준금액(과징금 또는 부당이득 또는 몰수·추징된 금액의 30%)
- (개정)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한 금액으로 단순화

□ 포상금 지급시기 변경(제39조의2 신설, 제40조 제1항, 제41조 제2항)

- 포상금 지급기준이 과징금(부당이득)의 일정비율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결정시 포상예정금액의 1/10(상한 1억원)을 먼저 지급
- 과징금이 국고로 실제 납부되고 관련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차액을 지급

마.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(2026/5/13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을 강화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지정 주기 및 지정 회사 수 확대(제9조)
 -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 강화를 위해 지정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
 - 보다 많은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회사수를 기존 8개 내외에서 10개사 내외로 확대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